

양벌규정의 위헌성

사업을 영위하다보면 종업원이 행한 행정법규 위반행위에 대하여 그 영업주에 대하여도 형벌을 부과하는 경우를 본 적이 있을 것이다. 이처럼 종업원의 비위행위로 영업주가 예상치 못한 처벌을 받는 경우가 흔하게 있었는데, 최근 헌법재판소에서 양벌규정의 위헌성 여부에 대한 결정을 내려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글_황선익(정부법무공단 변호사)



양벌규정이란

위법행위를 한 당사자자 외에 그 업무의 주체인 법인이나 개인(영업주)을 함께 처벌하도록 규정한 법규를 양벌규정이라 부른다. 이러한 양벌규정에 의한 영업주의 처벌은 금지위반행위자인 종업원의 처벌에 종속하는 것이 아니라 독립하여 그 자신의 종업원에 대한 선임감독상의 과실로 인하여 처벌되는 것이므로 종업원의 범죄성립이나 처벌이 영업주 처벌의 전제조건이 될 필요는 없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이다.

양벌규정에 대한 위헌결정

책임이 있는 사람에 대하여만 국가형벌권을 발동해야 한다는 것은 법치국가의 원리인 동시에 헌법의 기본이념인 인간의 존엄과 가치로부터 당연히 도출되는 것이다. 그런데 양벌규정은 그 행위에 직접 가담하지 않은 영업주에 대하여 형벌(벌금형인 경우가 많다)을 부과하는 것이므로 책임주의와 조화될 수 있는가에 대하여 많은 논란이 있었다.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최근 「다른 사람의 범죄에 대하여 그 책임 유무를 묻지 않고 형벌을 부과하는 것은 법치국가의 원리 및 죄형법정주의로부터 도출되는 책임주의에 반하므로 위헌이다」라는 결정을 하였다.

사건의 내용을 간단히 보면, 병원 사무장이 무면허의료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고용주인 의사가 벌금형으로 기소를 당하자, 그 의사는 「오로지 고용관계를 형성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어떠한 면책사유도 없이 무조건 처벌받아야 한다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며 위헌심판을 제청한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에서 「형벌은 범죄에 대한 제재로서 그 본질은 법질서에 의해 부정적으로 평가된 행위에 대한 비난인데, 그 부정적 결과발생이 어느 누구의 잘못도 아니라면 형벌을 가할 수는 없는 것이다. 의료법은 종업원 등의 범죄행위에 영업주가 비난받을 만한 행위를 하였는지 여부와는 전혀 관계없이 자동적으로 영업주도 처벌하고 있는바, 이는 전혀 비난받을 행위를 한 적이 없는 영업주에 대하여 다른 사람의 범죄행위를 이유로 처벌하는 것이므로 책임주의에 반한다.」라고 위헌결정의 이유를 밝혔다.

위헌결정의 범위

헌법재판소에 의해 어떠한 법률이 위헌결정되면 원칙적으로 그 법률은 효력을 상실하므로 영업주인 의사의 처벌을 면하고, 위헌결정을 받은 법률에 근거해 처벌 받은 자는 재심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이번 위헌결정은 종업원의 범죄행위와 연관성이 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무조건적으로 처벌하는 양벌규정이 위헌이라는 취지로 보아야 하지, 양벌규정 자체를 허용하지 않는 것으로 확대해석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책임유무를 밝혀 비난받을 사유가 있는 영업주, 예컨대 종업원의 비위를 알고도 방조한다던가 하는 자에 대하여 처벌을 한다 하더라도 책임주의 위반이 되지는 않을 것이다.

